

재 정 신 청 서

재정신청인 1. 고소인 권 인 숙 (權 仁 淑)

인천소년교도소 수감증 (수감번호 72번)

위 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외 명

(명단 및 주소는 별지 1.과 같다.)

2. 고발인 고 영 구 의 8명

(명단 및 주소는 별지 2.와 같다.)

피 의 자 문 귀 동 (文 貴 童) 외 5명

(별지 3.과 같다.)

위 피의자들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1986년형제19828, 19837, 19969, 19970호 독직가혹행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김 수장이 1986. 8. 22. 자로 한 각 불기소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므로 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재정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를 하여 인천사태수배자들의 체포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어내는 목적에서 상호공모하여,

가. 1986. 6. 6. 04:00경 ^{이재}피의자 옥봉환이 ^{이재}피해자를 부천

경찰서 상황실로 데려오게하여 ^{이재}피해자에게 동인이 양승조 등 인천사태수배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권양, 너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군" 하고 말하며 화를 내고 나가고 되따라 ^{이재}피의자 박성용이 ^{이재}피해자에게 "권양이 너무 말을 안하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나온 사람들(인천사태수배자들)과 한 팀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이재}피해자의

피의사실 담당조사관도 아닌(담당조사관은 경사 정오도였다.)

^{이재}상피의자 문귀동을 향하여 "문귀동, 자네가 말아서 해 보게." 라고 지시하자, ^{이재}피의자 문귀동은 그 무렵부터 동일 06:30경까지 피해자를 1층 수사과 조사실로 데려가서 인천사태수배자중 아는 사람의 이름과 소재를 대라고 추궁하면서 ^{이재}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음

제 1.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피의자 문귀동은 경장으로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근무하던 자, 같은 한희정, 같은 황병섭은 순경으로 같은과 형사계에 근무하는 자, 같은 옥봉환은 총경으로서 부천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자, 같은 박성용은 경위로서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장으로 근무하던자, 같은 이흥기는 순경으로 부천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는자 인 바,

(1.)

피의자 옥봉환, 동 박성용, 동 문귀동은,

1986. 5. 3.의 이른바 인천사태 이후 인천노동운동연합위원장 양승조 등 인천사태수배자들의 체포에 현상금과 1계급특진 등의 특전이 걸려있어 그 체포를 위하여 다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중, 때마침 피해자 권인숙(여, 23세)이 서울대학교 가정대 의류학과 4학년을 중퇴하고 공장근로자로 취업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변조·사용한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기회로 위 피해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성적수치심을

"이년 안 되겠군, 나는 5.3사태 때 여자만 다뤘다. 그 때
들어온 년들도 모두 아랫도리를 발가벗겨서 책상에 올려놓으니까
다 볼더라, 네 몸에 봉이 들어가면 안 볼겠느냐?" 고 폭언.협
박하면서 겁에 질려 벌벌떨고 있는 동녀의 자켓과 남방셔츠를
강제로 벗게한 후 ^{피의자}상피의자 이흥기를 불러 입회시킨 가운데에서
동녀의 바지단추를 풀고 지퍼를 직접 끌어내리면서 "너 처녀냐?
자위행위 해 본 적이 있느냐?" 고 묻고 브래지어를 들추어 밀어
올리면서 "젖가슴 생김으로 보니 처녀가슴" ^가가지가 않다"고 말하
고 계속 추궁하여도 여전히 불응한다는 이유로 젖가슴을 3-4회
주무르면서 위 이흥기에게 "고추가루를 가져와"라고 말하여 마치
고추가루물로 고문을 할 것처럼 협박하는 일방 동녀에게 책상으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기어이 자궁에 봉을 집어넣어야 말하겠느냐?"
라고 협박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나. 같은해 6. 7. 09:00경 부천경찰서 수사과에서 ^{피의자}박
성용, ^위등 문귀등과 경사 정오도 등 10여명의 형사가 피해자를
둘러싼 가운데에서 ^위피해자가 그 전날인 6. 6. 위 가항의 가혹
행위에 견디다 못하여 억지로 ^위피해자의 고우관계 등에 관하여 제

보한 사실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이

유로 경사 정도도가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한번 구타하고 피의

자 박성용은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이제까지 대우한 것과는 달

라질 꺼다, 오늘 저녁에 두고 봐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피

의자 문귀동에게 저녁때 "그런방법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피의자 문귀동은 토요일 밤중인 같은날 21:00-23:00경 사이에

불이 꺼져있는 부천경찰서 수사과로 피해자 권인숙을 끌고 들어가,

먼저, 위 수사과 조사계 제1호 조사실에서 피해자에게 "독

한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이제까지 네가 말한 사실은 아무

것도 믿지 못하게 됐다. 남들은 다 퇴근했는데 네년 때문에

토요일 저녁 쉬지도 못하고 한밤중에 또 조사를 해야 된다.

위에서 그년 되게 악질이니 족치라고 했다. 너의 자취방에

찾아온 년이 누구야" 라는 등 폭언을 하고 강제로 자켓과 남방

셔츠를 벗게한 후 상피의자 한희정과 같은 황 병선을 불러 동녀

의 양손을 등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고 양다리 안쪽에 나무봉을

끼워 꿰어 앉힌 후 동녀의 넓적다리⁵와 허리부위를 시퍼렇게 멍

이 들고 통통 부어오를 정도로 계속 짓밟고 때리게 하고 동녀가
비명을 지르자 "이 녀이 어디서 소리를 꺽꺽 지르느냐, 소리지르
면 죽여버리겠다. 너같은 녀 하나 죽이는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육박지르고,

다시 위 ^{의자} ~~권~~인숙을 뒷수갑을 채운채 역시 전기불이 꺼져있는 제
2호 조사실로 데리고 가서 문을 안으로 닫고 단 둘이 있는 상태
에서 조사를 계속하면서 동녀의 바지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고
상의를 올린 후 젓가슴을 주무르다가 팬티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동녀가 비명을 지르자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육박지르고, 동녀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으로 벗겨내린 후 의
자 두개를 서로 마주보도록 놓고 동녀를 한쪽 의자위에 수갑찬 손
을 의자 뒤로 돌린 상태에서 앉게 하고 문귀동 자식은 맞은편 의
자를 바짝 끌어당겨 그 위에 앉아 동녀의 몸과 밀착된 자세를
취한 다음 계속 수배자의 소재를 볼도록 강요하면서 수시로 동녀의
젓가슴을 주무르고 국부를 만지고 동녀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벼
대고, 그 후 동녀를 일으켜 세워 바지를 완전히 발가벗기고 브

래지어를 밀어올려 젖가슴을 알몸으로 드러나게 해 놓은 상태에서
뒷수갑을 한 채로 앞에 놓인 책상에 엎드리게 한 후 자신도 아랫
도리를 벗고 뒷쪽에 붙어서서 자신의 성기를 동녀의 음부에 대고
수회 비비고, 이때 동녀가 공포와 경악과 굴욕감으로 인하여 거
의 실신상태에 들어가자 동녀를 다시 의자 위에 앉히고 담배에
불을 붙여 강제로 몇모금을 빨게하고,

잠시 후 동녀를 의자 밑으로 난폭하게 끌어내려 바닥에 무릎을
꿇게하고 앉힌 후 문귀동 자신은 의자에 앉아 동녀가 자신의
성기를 정면으로 보도록 하는 자세로 조사를 계속하던 중 갑자기
동녀의 얼굴을 앞으로 잡아당겨 입이 자신의 성기에 닿도록 하
면서 자신의 성기를 동녀의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동녀가 놀라서
고개를 돌리니까 난폭하게 동녀의 몸을 일으켜 세운 후 강제로 몇
차례 키스를 시도하고 다시 입을 동녀의 왼쪽 젖가슴으로 가져가
유두를 세차게 빨기를 두어차례에 걸쳐 하고,

그 후 다시 동녀를 책상위에 먼저번과 같은 자세로 엎드리게
해 놓고 뒤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동녀의 극부에 몇차례 갖다대

100024 10/10/

엳다 떼엳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등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폭행과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2. 피의자 ⁴⁸¹한희정, ⁴⁸¹같은 항변서는

1986. 6. 7. 21:00-23:00경 사이에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제1호 조사실에서 위 문귀동이 권인숙을 조사할때 위 1항
나호 기재와 같이 동녀의 양손을 등 뒤로하여 수갑을 채우고 양다
리 안쪽에 나무봉을 끼워 꿰어 앉힌 후 동녀의 넓적다리 및 허리
를 멍이 시퍼렇게 들고 통통 부어오를 정도로 여러차례 마구 짓밟
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3. 피의자 ⁴⁸¹이흥기는

1986. 6. 6. 04:00-06:30경 사이에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제5호 조사실에서 위 문귀동이 위 권인숙을 조사할때 위
1항의 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옆자리
에 서서 지켜보고 위 문귀동이 고추가루 탄 물을 가져오라고 하자

이에 호응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 문귀동의 가혹행위가 용이하
도록 방조한 것이다.

제 2.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

1. 위 각 범죄사실은

가. 피해자 권인숙의 검찰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나. 참고인 이 향숙, 동 최 옥자, 동 박 외숙, 동 김 철한 및 기

타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다. 피의자 문 귀동, 동 옥 봉환, 동 박 성용, 동 이 흥기, 동

한 희정, 동 황 병선과 부천서 형사들인 김 해성 등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부분(동인들의 진술 중 믿

을 수 없는 부분 제외)

라. 검찰에서 시행한 현장검증결과와 기타 검찰수사과정에 나타난

제반정황 및

마. 장차 현출될 기타 제반 증거

등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위 증거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증거판단은 추후 검찰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나서 신청이유보충서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함.)

2. 검사의 불기소결정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의자 문귀동의 일부 범죄사실 및 나머지 피의자들의 각 범죄사실

에 대한 무혐의결정의 이유는 전적으로 위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변소와 부천서형사들인 김 해성, 권 오성, 박 경천 등의 진술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위 피의자들 및 나머지 부천서형사들은 대부분 검찰수사 당초부터 공모하여 문 귀동 등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알리바이 조작 등 허위진술을 일삼다가 수사과정에서 제반 객관적인 관계증거에 의하여 파탄에 부딪치자 비로소 진술내용을 일부 번복하기에 이른 자들로서 그 진술내용을 도저히 신빙할 수 없음이

채증법칙상 명백하므로, 검사의 위 무혐의 불기소결정이유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 점에 관하여도 검찰수사기록을 열람한 후 다시 상세히 논급할 예정이나, 우선은 별첨 "검찰발표에 대한 변호인단의 견해"를 참조하시압.)

나. 위 무혐의결정이유 중 제2호 조사실의 현장상황을 설명한 대목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즉, 위 조사실은 당시 방안의 불이 꺼져있었을 뿐 아니라 조사실 바닥의 높이는 지상에서 계단을 서너개 올라가야 할 정도로 높이이고 외부와 면한 유리창은 조사실 바닥으로부터도 상당한 높이 위에 있었으며 피의자 문 귀동과 피해자는 위 유리창 바로 아래쪽에 있었으므로 설사 유리창에서 12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기고 앞을 순찰조가 돌고 있다고 해도 그 순찰조가 유리창을 통하여 위 조사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사광경을 목격·식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 무혐의 결정이유에서 마치 위 조사실 내의 조사광경이

외부에서 들여다보일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것이다.

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면서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몸을 비틀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하는 등 소극적인 저항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서 뒷수갑을 차고 각목을 양쪽다리 안쪽에 끼운채 꿰어앉혀져서 무수히 짓밟히고 구타를 당한 직후 아무도 없는 불꺼진 조사실 내로 끌려들어가 문자그대로 죽음의 공포에 직면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정황을 고려하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고, 한편 당시 토요일 심야에 피의자 문귀동이 입회형사까지도 떼어내 버리고 23세의 처녀인 피해자를 데리고 단 둘이 불이 꺼진 위 조사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잠그고 피해자에게 뒷수갑을 채운채 1시간 반 가량이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의함)하는 등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인천사태수배자에 관한 정보를 캐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제반 관계증거에 의하여 움직일 수 없이 명백

히 드러나 있는 이상, 위 항거불능 사실이 위 추행이 가능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위 추행이 불가능하였음을 단정할 자료는 도저히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무혐의결정이유는 이 점에서도 부당하다.

나아가, 위 무혐의결정이유 중 하나로 피해자가 조사 후에도 일체 항의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 "상식상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이 적시되어 있는데, 도대체 경찰관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항의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야 말로 "상식상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검사가 스스로 인정한 피의자 문귀동의 일부 범죄사실만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위 문귀동을 구속기소하기에는 충분하다.

즉, 처녀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목적으로"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여 옷을 벗게 한 행위, 젖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죄어박은" 행위, 입회형사에게 고춧가루물을 가져오라고 말하여 고춧가루물로 고문을 할 것처럼 위협한 행위, "... 내가 조사를

하면 간첩도 본다. 너같은 년은 처음 본다" 라는 등 폭언을 한 행위, 토요일 심야에 불 꺼진 밀폐된 조사실 내에서 피해자의 양손에 뒷수갑을 채운채 단독으로 조사를 하면서 젖가슴 부위를 또 3-4회 가량 "죄어박은" 행위 등은 우리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적 존엄성의 이념 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폭거요, 우리 사회의 인륜 도덕의 밑바탕을 뒤흔드는 만행으로서 적어도 국가공권력에 의거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며, 일반적 법감정으로 보나 형사정책적 견지에서나 마땅히 구속기소되어야 할 사안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더우기, 위 문귀동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알리바이까지 조작해 가면서 집요하게 범행을 은폐하려고 허위진술을 일삼았을뿐 아니라 심지어는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인 권양을 상대로 고소까지 제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위 문귀동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많다"고 하면서 기소유예결정을 한 것은 어불성설의 부당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검사가 위 범죄사실을 두고 "직무에 집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위 문귀동이 위 피해자에게 진술의 의무가 전혀 없는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강요하고 있었던 사실, 전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비정상적인 시기에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되풀이하였던 사실, 특히 마지막 조사 시에는 의도적으로 입회형사를 내보내고 밀폐된 조사실 내에서 뒷수갑을 채운채 1시간 반 가량이나 불을 끈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건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또 위 문귀동이 10여년간 경찰관으로 봉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고 하는 것도 동일한 검찰조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 등 "불성실"한 성행에 비추어 볼때, 전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결정문

1. 고발인통지

1. "검찰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의 견해"

1. 위임장

1986. 9. .

위 재정신청인 고소인 권인숙 대리인겸 고발인

변호사